



꼼꼼한 제도개선 간간한 사전관리

|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



환경부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내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건축자재는 '사후표본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하여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을 제한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자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 관리대상 건축자재 및 관리물질

- (관리대상)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입니다.
- (관리물질)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등 3종입니다.

(단위 : mg/m² · h)

구분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2016년까지	2017년부터		
	접착제	0.05	0.02	2.0	0.08
	페인트			2.5	
	실란트			1.5	
	퍼티			20.0	
	벽지, 바닥재			4.0	

❖ 사후표본조사 관리현황

'05년~'16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3,500종의 건축자재를 조사하여 기준을 초과한 266종(7.7%)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구분	계	페인트	접착제	퍼티	실란트	벽지 · 바닥재
사용제한 자재수	266	161	26	1	2	76

❖ 위반시 조치사항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설치자가 사용제한된 건축자재를 사용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6년 12월 도입되는 '사전적합확인제도'는 건축자재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개 · 보수를 포함) 할 때에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도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에는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 받은 후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 한눈에 보는 사전적합확인제도

주요 내용

현 행	개정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이 유통 중인 건축자재를 사후 표본조사 후 기준 초과 건축자재 사용제한 • 건축자재 사용재(시설 설치자)에게만 의무 부여 •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비용부담하여 표본조사	• 건축자재 제조 · 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공급 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기준적합 여부 사전확인 의무 부과 • 건축자재 사용재(시설 설치자) 외에 제조 · 수입업자에게도 의무 부과 • 민간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지정, 건축자재 제조 · 수입업자가 비용부담하여 확인

사전적합확인제도 관리대상 및 관리물질

시험기관

현행 건축자재 6종과 오염물질(3종) 방출기준과 동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기관, 영리법인 등 민간기관으로 구분 · 지정됩니다.

- 시험기관 신청 · 지정 절차,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 업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86호, 2016.8.11)에서 규정합니다.
- 시험기관은 제조 · 수입업체, 건축자재명, 시험 · 검사방법,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자 등이 포함된 '시험기록부'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확인절차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표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험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험결과(시험성적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시험결과 기준이내의 건축자재는 '실내용 건축자재 표지'를 제품에 부착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확인시험을 받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에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실내용 건축자재 표지'를 통해 기준이내의 건축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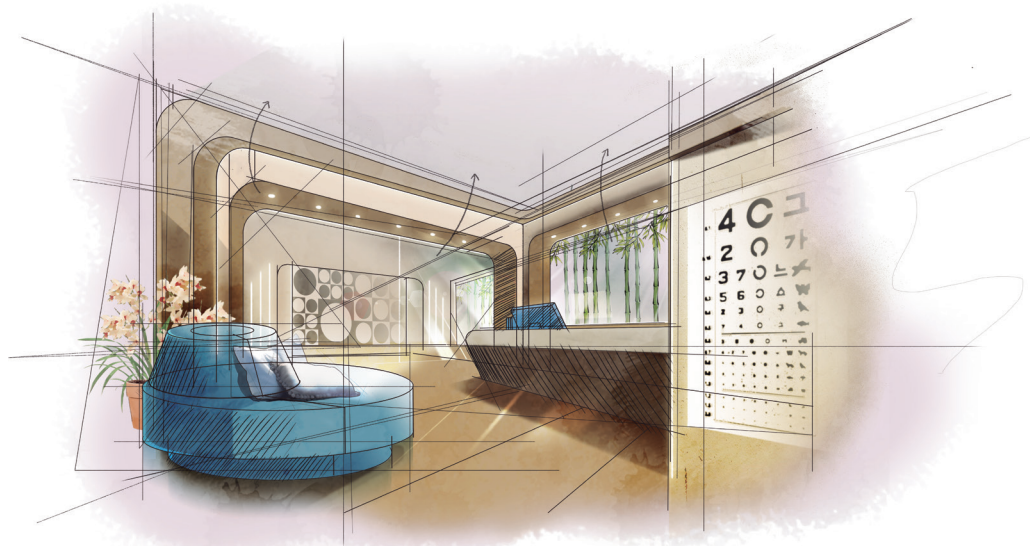
적용대상 시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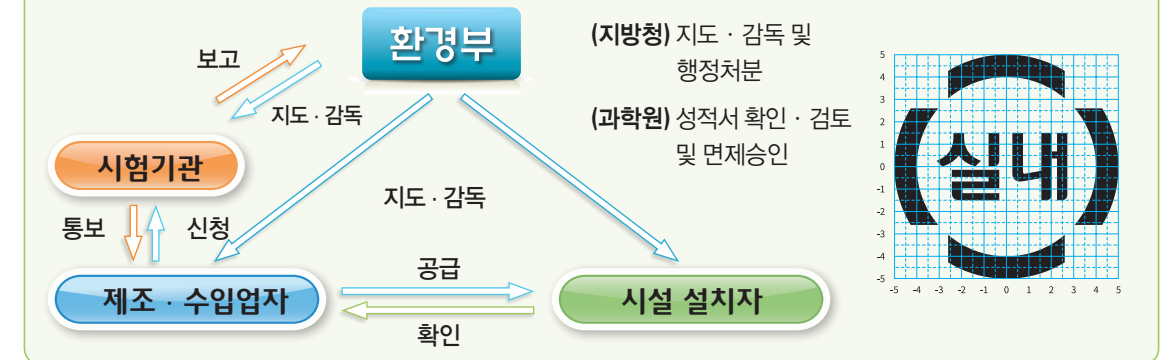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 사용('14. 5월~)

위반시 조치사항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 및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할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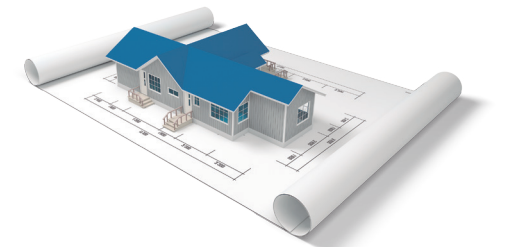


적용시기

시험기관의 시험능력에 비해 유통되는 건축자재의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제조·수입 시기에 따라 시험검사시기를 달리 적용합니다.

- 법 시행일(2016.12.23) 이후 제조·수입되는 건축자재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시행일부터 즉시 적용(유통전에 적합여부 확인)됩니다.
- 특히,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조·수입되어 유통 중인 건축자재는 2017.12.22까지 적합여부 확인(1년 유예)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적합확인 뒤에도 사후관리! 2중으로 확인해 더욱 안전합니다



❖ 적합제품 사용여부 확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주택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자재 목록표 및 시험성적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법제품 유통여부 확인

건강한 건축자재의 사용을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가 및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사용 또는 공급하는 건축자재를 확인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며, 아울러 위반내용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적용대상 및 건축자재의 종류

구분	용도	구분	용도
벽지	벽이나 천정을 도배하는데 쓰이는 종이를 말하며, 종이 외에 각종 섬유, 플라스틱 합성품 등이 있다. 	페인트	안료(顔料)를 전색제 또는 결합제와 섞어서 만든 유색의 도료를 말하며, 유성페인트, 에나멜페인트, 수성페인트 등이 있다. 
바닥재	바닥에 까는 데 사용하는 모든 건축 재료를 가리키며, 목재, 돌, 타일 등이 있다. 	실란트	창틀의 접합부나, 빈틈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를 말하며, 기밀 또는 수밀 기능을 하고, 부재 상호간의 신축, 진동, 변형을 흡수 완화한다. 고무상의 물질, 연질, 고점도의 액상 등이 있다. 
접착제	두 물체를 서로 접합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을 말하며, 녹말풀, 고무풀, 요소수지, 폴리아세트산비닐계와 같은 고분자 접착제 등이 있다. 	퍼티	도장 바탕의 오목하게 패인 부분을 보수하거나 창호에 판유리를 끼울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말하며, 유지나 수지에 무기질의 충전제 등을 첨가한 것. 

❖ 다중이용시설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대상 시설	적용대상 규모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	연면적 3,000㎡ 이상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기계식주차장 제외)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국공립 · 법인 · 직장 · 민간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 이상
장례식장	연면적 1,000㎡ 이상(지하)
목욕장	연면적 1,000㎡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영화상영관	실내에 위치한 영화상영관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옥내시설
PC방	연면적 3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실내 공연장	객석수 1천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1천석 이상

※ 업무시설, 둘이상 용도건축물,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2016.12.23부터 적용

❖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의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본 인쇄물은 재생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꼼꼼한 제도개선 간간한 사전관리

|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



환경부